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7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8.

발의자 : 김민기 · 김경협 · 김병욱

김상희 · 김현권 · 노웅래

박남춘 · 손혜원 · 안민석
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,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별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.

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 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.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「문화재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1. 현지보존

2. 이전(移轉)보존

3. 기록보존

4.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

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)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)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「문화재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지보존 2. 이전(移轉)보존 3. 기록보존 4.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<p>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</p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
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
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
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
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